

의안번호	제 36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5월 일 (제280회)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5월 8 일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
----------	-----

발의연월일 : 2009년 5월 8 일

발 의 자 : 권광택 · 이영복 · 박종갑 ·
송은섭 · 박영웅 · 심홍섭 ·
민경환 (7인)

1. 제안 이유

- 복잡·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민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식재산의 인식 향상과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시(안 제5조)
- 라.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시책 강구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안 제7조)
- 바. 진흥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 규정
(안 제8조)
- 사. 권리침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안 제9조)
- 아. 지식재산의 진흥과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10조)
- 자. 위원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보호 의무 규정 명기
(안 제12조)
- 차.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사무 위임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상호와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배치설계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

관, 단체, 법인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나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나 협회를 말한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나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도보

2. 도 홈페이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의 게시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설립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충북지식재산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나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 등을 대행하게 한다.

1. 제3조제1항과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군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실용신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4.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道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지적)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